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기상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7025
----------	-------

발의연월일 : 2026. 2. 25.

발 의 자 : 최기상 · 정태호 · 정일영
김태년 · 장종태 · 김영환
이상식 · 이주희 · 김승원
이정문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등에 대하여 고객의 거래나 지급 또는 수령이 이 법에 따른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것인지를 확인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제10조제1항),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함(제29조제1항제2호).

이와 관련하여,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행정제재로서 입법목적 달성이 가능한 경우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으며, 현행법상 제10조제1항 위반 시 형사처벌 외에도 등록·인가의 취소, 업무 정지, 과징금 부과 등을 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제12조제1항, 제12조의2).

이에 고객의 거래 등이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것인지를 확인하지 아니한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등에 대하여 과징금 등의 행정제재

로 입법목적 달성이 가능한 점을 고려하여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9조).

법률 제 호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환거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제29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위반행위의 목적물 가액의 3배가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벌금을 목적물 가액의 3배 이하로 한다.	제29조(벌칙) ① ----- ----- ----- -----. -----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u>확</u> <u>인하지 아니한 자</u>	<삭 제>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